

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위탁에 관한 조례안 심사 보고서

(의안 번호 제34호)

- '98. 12. 12.
- 총무재무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 일자 및 제출자 : '98. 11. 20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 일자 : '98. 11. 20
- 다. 상정일자 : '98. 12. 7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83회 정기회 중 총무재무위원회
제2차 회의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정태옥)

가. 제정이유

-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·운영중인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·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- 조례제정의 목적(제1조)
-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위탁근거 마련(제4조)
- 수탁자 선정기준(제5조)
- 위탁방법(제6조)
 - 위탁계약사항, 위탁기간 및 연장에 관한사항
- 수탁자에 대한 지원(제7조)
- 사용료등 비용의 징수(제8조)

- 수탁자의 의무(제9조)
- 위탁사무에 대한 지휘감독(제10조)
- 위탁의 취소(제11조)
- 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마련(제12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재근)

가. 검토내용 : 생략(검토보고서 참조)

나. 검토결과

□ 서초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초구에서 설치·운영중인 사회복지관, 여성회관등의 복지시설 및 어린이집, 구민체육센타등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·운영의 근거규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관리·운영의 일관성 및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□ 주요골자는

- (안 제 1조) :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,
- (안 제 2조) :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으며,
- (안 제 4조) : 공공시설의 관리운영위탁근거를 마련하는 근거규정으로서 다른 행정기관, 법인, 단체, 개인을 수탁 대상자로 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의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(안 제 5조) : 수탁자 선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(안 제 6조) : 의탁방법으로서 위탁계약사항, 위탁기관, 위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,
- (안 제 8조) : 수탁자는 법령조례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, 수수료 징수 가능토록 함.
- (안 제 9조) : 수탁자는 위탁계약사항준수, 시설장비의 성실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음.

- (안 제10조) : 위탁사무에 대해 이행사항 감사, 조사등을 실시하고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함.
 - (안 제11조) : 수탁자의 의무위반, 조건위반시 위탁의취소 및 취소시 사전의견 진술기회 부여
 - (부 칙) : 시행일을 '99. 2. 1부터 시행하고 경과조치 규정을 마련함.
- 본 조례안은 서초구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, 영유아보육법,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한 사회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근거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95조, 사회복지 사업법 제34조, 영유아보육법 제15조등에 시설을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지방재정법 제109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, 사회복지사업법이 1997. 8.22 전문개정되고, 동법시행규칙이 1998. 8.11 전문개정 시행되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등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, 위탁운영등 업무의 일관성,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근거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문) 제5조에 보면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신청하는 것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이를 강제규정으로 하는 것과 제6조에서 위탁계약기간 5년을 3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견해는?
- 답) 제5조에서 수탁자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하는것과 제6조의 위탁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.

- 문) 제9조에 보면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을 중·개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갱신하고자 할 때 연고를 주장할 소지가 있으므로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?
- 답) 수탁자가 중·개축하였을 때 연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공증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이 조항은 살려두었으면 함.
- 문) 부칙에 기위탁계약 체결된 시설에 대하여는 위탁기간을 기계약기간으로 하는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는?
- 답)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으로서 단서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.
- 문) 제4조에 보면 어린이집을 제외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구립체육센터도 포함시킬 용의는?
- 답) 포함시켜도 무방함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○ 수정동의안 발의(발의자 : 정웅섭 위원)

- 안 제5조중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수정
- 안 제6조제1항중 「위탁계약」을 「위·수탁계약」으로 하고, 위탁계약기간을 「5년」에서 「3년」으로 수정
- 안 제9조제3항중 「위탁계약」을 「위·수탁계약」으로 하고, 제4.5항을 삭제
- 안 제11조제1항제3호의 「위탁계약」을 「위·수탁계약」으로 수정
- 부칙 제2조중 「제6조제1항제2호의 위탁계약기간은 기계약된 기간으로 한다」라는 단서조항을 삽입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고,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음(의제성립)

○ 재수정동의안 발의(발의자 : 권금택 위원)

- 정웅섭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덧붙여서,
- 안 제4조중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한하여 위탁운영하는 시설에 공공시설도 포함시키자는 재수정동의안이 있었고, 이에 대한 재청이 있었음(의제성립)

6. 수정안의 요지 : 별첨 수정안 참조

7. 심사결과 : 재수정동의안(만장일치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제례자구 정리내용

<별표1>중 도시관리국 소관 시설명 「구립 구민체육센타」를
「구립 서초구민체육센타」로 정정